

## 2026년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채용시험 공고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성별	담당업무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탁소년 상담·교육, 심리검사</li><li>정신질환 등 심신회복이 필요한 위탁소년의 치료·상담</li></ul>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계약기간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체결일 ~ 2027. 6. 14.

다.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월~금) 근무

라. 보수기준 : 월 3,826,200원 상당(기본급·정액급식비 포함)

마.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2,199,720원, 년 2회 지급) · 맞춤형  
복지비(500,000원)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3 응시요건

#### 가. 공통요건

#####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6. 12. 31.이전)

※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 20세 이상으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근 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응시가능

나. 자격 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4 시험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                |
|--------------------|----------------|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 5 합격자 발표 및 후보자 선정

- 일 자 : 2026. 8. 5.(수)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 집 공 고	'26. 6. 29.(월) ~ 7. 10.(금)	○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26. 7. 8.(수) ~ 7. 10.(금)	○ 방문·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26. 7. 20.(월) 예정	○ 장소 : 2층 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26. 7. 22.(수) 예정	○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6. 8. 3.(월) 예정	○ 장소 :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6. 8. 5.(수) 예정	○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계약) 예정일	'26. 8. 24.(월) 예정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조회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

### 나. 접수기간 : 2026. 7. 8.(수) ~ 7. 10.(금)

※ 원서접수는 평일 주간에만 접수, 접수시간은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증”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라.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 력 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4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해당자 병역사항 기재)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12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9 기타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 반환 청구시(별지 서식 제11호) 관련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031-341-9130)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본인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법무부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표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해당여부 : ‘해당’,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①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성실하게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은 읽고 삭제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6. . .

작성 자 : (인/서명)

##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	-------------------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업무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 작성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성실하게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은 읽고 삭제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6. . .

작성 자 :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자격·면허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b>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b>	근로자 채용 관리	<b>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b>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b>	근로자 채용 관리	<b>자격·면허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b>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b></p> <p>※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b></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등)
- 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⑥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